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행업자의 사증 신청 대행 시 비용 고지 등 >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89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여행업자의 사증 신청 대행 시 비용 고지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건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6. 3. 3.

다. 회 부 일: 2026.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여행업자의 사증 신청 대행 시 비용 고지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여행업자가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이하 “사증등”)를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안 제13조의3제1항·제4항 신설), ②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3조의3제3항 신설), ③ 여행업자가 인터넷상에서 사증등 발급기관의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임(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사증 등의 대행)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사증 또는 사전여행허가(이하 “사증등”이라 한다)를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자는 인터넷상에서 사증등 발급기관의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③ 여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업자는 해당 여행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비스 이용료 반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현행법 시행령²⁾은 여행업에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

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 7. (생략)
- ② (생략)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여행허가³⁾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대행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후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전자여행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여행업자의 사증등 발급 대행 시 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여행업자가 사증등 발급기관의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및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해 사증등의 신청 대행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다만, 사증등의 신청 대행서비스는 여행업자 외에도 전문 비자대행업체, 대행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여행업자에 대한 규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 6. (생략)

② (생략)

3)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사증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

4)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대행 사이트 주의하세요”, 2025.7.11.

제 신설만으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전자여행허가 대행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여행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적용대상(국내 여행업자)과 실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각국 정부사이트를 사칭하는 해외 대행사이트) 간 불일치로 법안의 실효성 저하 및 국내 여행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공식 사이트 오인 유발 및 과도한 수수료 청구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사기 및 기만행위로 외교부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식 사이트 이용을 독려하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